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2절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에 있어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작업 중 기계운전과 근접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기계운전과 근접작업

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, 근접작업 근로자, 관리감독자등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4.1 기계운전자의 준수사항

(1) 기계는 작업전에 모두 정비하고 운전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